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Q

얼마 전 일반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항목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추후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 4가지 건강진단이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그 밖에 건강진단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자가 받습니다. 건강진단을 수행한 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른 결과표를 송부합니다.

결과표에는 질병 유소견자 현황 및 검진 소견 등이 기재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중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질문자의 경우 또한 소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텐데요. 중요한 것은 평소 건강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내 보건관리자 혹은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상담을 적극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및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건강진단 실시				
건강관리 구분 판정	이상 소견 없음 건강자(A)	이상 소견 있음 요관찰자(C ₁ , C ₂), 유소견자(D ₁ , D ₂)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현재 조건에서 현재 업무 가능	일정 조건에서 현재 업무 가능	일정 기간 현재 업무 불가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 불가
사후관리 판정	사후관리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착용하면서 근무 • 추적검사 받으면서 근무 • 치료받으면서 근무 • 작업장소 변경 • 근무시간 단축하면서 근무 • 야간작업 제한 	병가, 휴직 치료 후 현재 업무로 복귀	타업무로 전환 조치

건강진단 건강관리 구분 판정

구분	내용	
A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건강한 노동자)	
C C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단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노동자 (직업병 요관찰자)
	C ₂	일반 질병으로 진단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노동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D ₁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 (직업병 유소견자)	
D ₂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노동자 (2차건강진단 대상자)	

※ 2차건강진단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U로 분류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 소견서 검진 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자료 : 안전보건공단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드립니다.

58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

